신노후생활연금신탁 국공채형 제()호 약관(구 하나은행) 개정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고
제4조(거래장소)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	제4조(거래장소)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	문구 추가
점(이하 "개설점"이라 함)에서 거래하여야 합니	점(이하 "개설점"이라 함)에서 거래하여야 합니	
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	다. 다만, <u>은행이 사전에 안내한</u> 다른 영업점,	
점,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	
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함)을 통하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함)을 통하여	
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제10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	문구수정
신탁의 등기·등록 또는 신탁의 표시나 기재를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	
생략 할 수 있습니다.	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합니다	
제15조(판매금액 및 판매기간) 이 신탁은 판매	제15조(판매금액 및 판매기간) 이 신탁은 판매	
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	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u>.</u> 다	문구 수정
만, 수익자보호 및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만, 관련 법령 및 금융감독당국에서 정하는 바	
위하여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을 둘 수	에 따라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이 설정	
있습니다.	되는 경우 은행은 제한 내용을 지체 없이서면	
	등 사전에 거래처와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4조(조세 및 비용) ①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	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하여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제24조(조세 및 비용) ①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	문구추가
제25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생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 대할 때 은행은 <u>사전에 안내한</u>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1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제31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현 행	개정안	비고
	· ·	·
① 거래처는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	① 거래처는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	선시 역세
손했을 때는 서면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	손했을 때는 <u>지체없이</u> 신고하여야 합니다.	
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시간 중에 전	②거래처가 인감(또는 서명)·비밀번호·성명·상	
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음 영	호·대표자·대리인· <u>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u>	
업일안에 서면신고하여야 합니다.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때는 <u>지체없이 은행에</u> 신	
②거래처가 인감(또는 서명)·비밀번호·성명·상	고하여야 합니다.	
호·대표자·대리인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	<삭 제>	
한 후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		
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		
한 때는 복구 등 사유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직접서면으로 해야 합		
니다		
제36조(통지방법)	제36조(통지방법)	
①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을 경우	①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신고된 연락처로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에는 신고된 연락처로 서면이나 전화 등 <u>사전</u>	

현 행	개정안	비고
통지합니다	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②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②은행이 제 <u>1항의 통지를 서면으로 했을 때는</u>	
우송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없이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은행에 대한 통지등이 연착하거나 도착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후 도	
	<u>달한 것으로 봅니다.</u>	
	③은행이 신탁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③<신 설>	하는 때에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관계법령	
	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거래처가 제31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	
	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후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신탁금의 시효) 신탁금에 대한 수익권	<u>,삭 제></u>	
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38조(약관의 변경등)	제37조(약관의 변경 등)	조항변경

현 행	개정안	비고
①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1개	①은행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	
월동안 게시하고 이 기간이내에 거래처가 서면 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	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	
으로 봅니다	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마련	
	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	
	한 컴퓨터 화면,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재·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	
	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	
	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신 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	
	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거래	
	처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	
	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	
	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	
	<u>하지 아니합니다.</u>	

	현 행	개정안	비고
,신	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	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	
		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	
		로 봅니다.	
<신	설>	⑤ 은행은 약관을 은행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게시하여 거래처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	
		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	
		<u>니다.</u>	
(2) 0)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계법령이나 신	<u><</u> 삭 제>	
	독규정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		
기로 힘	 나다.		

현 행	개정안	비고
제39조(면책)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	제38조(면책)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	조항변경
된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	된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	
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청구서등에 적힌 비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청구서등에 적힌 비	
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	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	
여 지급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또	여 지급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또	
는 서명)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위조·변조,	는 서명)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위조·변조,	
비밀번호의 누설이나 그 밖의 어떠한 사고로말	비밀번호의 누설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미암아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u>은행의 책임 있</u>	
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u>는 사유가 없는 한</u>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	
	다.	
②은행은 전산통신기기 등의 이용이나 거래정	②은행은 전산통신기기 등의 이용이나 거래정	
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	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	
로 말미암아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	로 말미암아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	
로써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로써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지지 아니합니다. <u>다만,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계</u>	
	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누설을 통지 받은 때에	
	는 그때부터 제3자가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사	
	용하여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u>을 집니다.</u>	

현 행	개정안	비고
③은행은 제31조 신고 및 절차의 지연으로 말	③거래처가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31조	
미암아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의 신고를 지연하여 발생한 거래처의 손해에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신 설>	④제1항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	
	시 접근매체(카드,비밀번호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	
	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	
	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	
	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거래	
	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실 여부	
	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거래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	
	우 등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 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	
	래법 등 관련 법령에 거래처에게 유리하게 적용	

현 행	개정안	비고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 선 적용합니다.	
제40조(관계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신탁업감독규정 및 은행 내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조항변경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제40조(관할법원) 은행,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조항변경
	제41조(공시) ①,② (좌 동) ③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시사항은 당행의 인터넷사이트(www.kebhana.com>고객센터> 상 품공시실>신탁상품>신탁기준가 조회)을 통하	조항변경

현 행	개정안	비고
	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